

## 노동자를 죽이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필연이고! 대통령 거부권은 파소다!

2023년 9월 6일 | 민주노총 교육원 | [www.nodong.org](http://www.nodong.org) | 02-2670-9100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년간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으로 몰았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이전 “진짜 시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없도록” 투쟁으로 바꿈시다

“회사가 해도 너무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악랄한 정책에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 사원의 고용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내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2002년 파업을 이유로 65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합원 임금과 재산을 가압류한 두산중공업에 맞서 2003년 1월 9일 자결로 저항한 고 배달호 열사의 유언 중.

노란봉투법!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했을 뿐인데 법원은 노조와 조합원에게 47억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손해배상과 월급 가압류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지원하고자 배춘화님이 4만 7천 원을 월급봉투를 상징하는 노란봉투에 담아 언론사(시사인)에 보냈고, 이 사연을 들은 가수 이효리님 등이 참여하면서 소위 노란봉투법 “부당한 손배 가압류를 막아야 한다는 입법 운동” 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었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임금 30% 삭감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파업했는데 돌아온 것은 470억 손해배상소송이었다.

2023년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국회 본회의 의결이 추진되고 있다. 20년 전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손해배상 및 가압류 폭탄 탄압으로 분신 자결하신 지 20년 만이고, 그 과정에서 한진중공업 김주익, 광재규, 최강서 열사 그리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고 민주노조는 침탈당했다. 20년을 투쟁해왔다. 이번엔 반드시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하여 20년 투쟁을 완수하자!

## 1. 궁극하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핵심은 3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진짜 사장(원청)까지 교섭 범위 확대 둘째, 노동쟁의권(파업권)의 범위를 확대(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파업 가능) 셋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 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간접 고용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대부분 노동자의 노동 3권이 확대됨으로써 노·사 관계 균형이 좀 더 민주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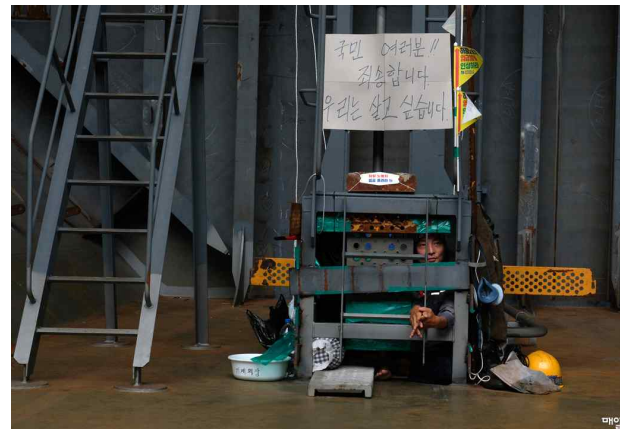
## 2. 현행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로 인한 현장 피해

### 1) 현행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핵심은 무엇인가?

- 사용자의 범위를 좁게 규정해서 하청노동자는 진짜 사장(원청)과 교섭 자체가 불가능.
- 노동쟁의권(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초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협약 갱신의 경우만 가능하도록 규정, 따라서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파업을 할 수 없음.
- 사업주의 부당한 구조조정, 단협 불이행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 불법행위로 매도되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게 무차별적 재산 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제기.

### 2) 이런 잘못된 법률로 인해 노동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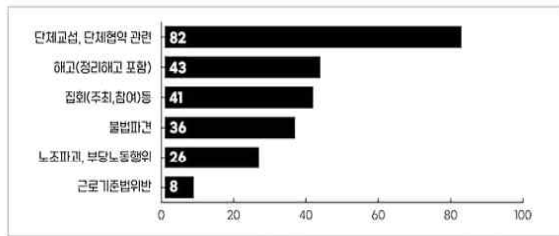
이렇게 기울어진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노동자는 어마어마한 탄압을 당했다.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임금, 고용, 복지, 안전 등 대부분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청업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이에 노동조합이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결정하면 원청은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하청업체를 투입한다. 이런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하면 또다시 손해배상 폭탄(청구서)이 날라 온다. 이것이 현행 노조법의 핵심 문제이다.



법규정이 이러니 법원의 판결도 노동자에게 불리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고의·과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도 법원은 ‘경영권’을 내세웠다. 법원은 정리해고를 ‘경영상의 결단’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희망이 존재할 수 없었다. ‘불법파견’과 관련한 쟁의행위 역시 사법부가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었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동양시멘트 등 많은 기업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법원은 이와 관련한 파업에 대해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업주가 이렇게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이유는 잔인했다. ‘노조파괴’ 수단으로 사용하고, 공포감을 유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성기업 사건이다. 2011년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파괴 전략을 짰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갑을오토텍과 보쉬전장 사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손해배상소송 중 소송을 취하한 사건을 분석해 보면 사업주의 잔인함이 드러났다.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하면 소송을 취하해 준 것이다. 결국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금전 관계가 아닌 노조에 대한 탄압과 공포감 유발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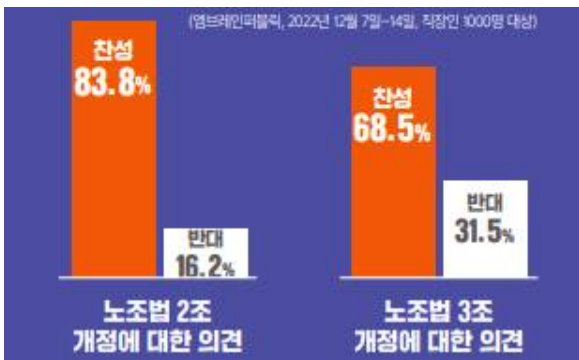
쟁의행위 발생 원인(1989년-2022년 5월)



자료 :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입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 3. 국민, 국제노동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는 하나같이 노조법 개정 촉구

#### 1) 국민이 노조법 개정 찬성



#### 2) 2012년 ILO(국제노동기구) 권고

- 한국 정부는 화물운송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에 따른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특수고용노동자도 국제노동협약에 따른 노동 3권을 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것.
- 노동기본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노사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법을 개발할 것.

#### 3)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법 2조 노동자(근로자)의 정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의 정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함.
-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임·단협 협상 때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대응 때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이나 가입류는 제한되어야 함.

#### 4) 2023년 대법원은 판결로 권고


대법원은 202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회사 측에서 제시한 조합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이 불합리하다고 파기·환송했으며, 불법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라고 주문함.

#### 4. 대통령 거부권 운운은 파쇼적 광풍!

현재 9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은 과도하게 기업친화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평평하게 수정함으로써 노사정의를 회복시키는 최소한의 보장을 입법화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정신과 국익에 부합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2021년 4월 20일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를 비준하였고, 이것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은 위와 같은 헌법과 ILO협약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이 거

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자본의 이윤을 위한 노동자 탄압, 파쇼적 광풍일 뿐이다.

#### 5. 민주노총 투쟁 결심

민주주의 기본은 삼권 분립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집행 불가능성 등 특정한 경우에 소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번 노란봉투법과 같이 현행 노조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입법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투쟁을 결의했다. 투쟁! 

#### □ 9월국회 본회의 통과 압박 주요 사업

- 국회의원 면담, 동의서 요구
  - 일시 : 9.6(수) ~ 9.15(금)
  - 방식 : 전체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노조법 개정 의견서 제출 요구(9.21까지 제출)
- 대시민선전
  - 매주 수요일 (9.6, 9.13, 9.20) 전국동시 대시민 출근선전 : 수도권은 지하철역사, 지역은 도심 주요거점
- 국회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9.6(수) 11시, 국회 농성장앞
- 국회 앞 집중선전
  - 일시 : 9.6(수) ~ 9.15(금) 민주노총-운동본부
  - 방식 : 국회앞 중식선전 진행 (일별 담당 산별 20명) ※운동본부 9.5부터 농성 시작
-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및 범국민대회
  - 9.16(토) 14시, 철도파업(공공성),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 결합
- 국회 앞 농성
  - 일시: 9.18(월) ~ 9.25(월) 08시~20시
  - 방식 : 출근·중식·퇴근선전 및 기획집회·선전, 촛불집회 참가 (일별 담당 산별 100명)
- 국민의 힘 압박사업
  - 일시 : 9.18(월) ~ 9.22(금), 지역본부별 진행(축구방문 및 당사앞 농성등)

#### □ 대통령 거부권 저지투쟁

- 산별릴레이 도심농성투쟁
  - 일시 : 10.4(수) ~ 10.10(화). 매일 17:30~다음날 09:00
  - 방식 : 대시민선전 및 촛불집회, 야간노숙농성. 일별 담당 산별 100인 릴레이로 진행
- 대통령거부권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전체집중)
  - 일시 : 10.10(화) 14시. 서울도심